

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1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5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설물 개보수 경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인 '민간단체 법정운영비'로 편성할 수 없는바,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서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6조제6호의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지원 대상사업에서 삭제함.

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, 안 제6조제7호를 제6조제6호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 (예산의 지원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</u>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 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.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.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<p><신 설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.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<p>제5조 (예산의 지원) ----- ----- - <u>재향군인회의 운영과</u> ----- ----- 범위----- -----.</p> <p>제6조 (지원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5. (현행과 같음) <p>6.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	<p>제5조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5. (현행과 같음) <p><삭 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”을 “재향군인회의 운영과”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예산의 지원)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재</u> <u>향균인회가 추진하는</u> 각종 사 업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</u> 내 에 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 (예산의 지원) ----- ----- <u>재</u> <u>향균인회의 운영과</u>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